
보상계획 열람·공고,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

1 질의

보상계획 열람·공고,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2조 제4호는 “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3조는 “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(1호),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(立木), 건물,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(2호), 광업권·어업권-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(3호), 토지에 속한 흙·돌·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(4호),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고,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,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·공고,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 [2021.11.22. 토지정책과-11185]